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21

발의연월일: 2020. 8. 24.

발 의 자:김병기・이동주・김진표

강선우 · 강준현 · 이낙연

이정문 · 김홍걸 · 서영교

민홍철 · 안규백 · 황 희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할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이 짧아 숙련병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장병들이 군 내에서 직업안정성을 가지기 어렵고, 단기하사로 임용되어 복무하고 있음에도 "유급지원병"으로 호칭되어 신분의 모호성에 의한 사기 및 복무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군에서 필 요로 하는 숙련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 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현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4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병을 확보하고, 그 명칭을

유급지원병에서 "임기제부사관"으로 개정함으로써 군의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 0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의 제목 "(유급지원병제의 운영)"을 "(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숙련병"을 "숙련인력"으로, "1년 6개월"을 "4년"으로, "사람(이하 "유급지원병"이라 한다)"을 "사람"으로, "있다"를 "있다(이하 선발되어 연장복무 중인 사람은 "임기제부사관"이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"유급지원병"을 각각 "임기제부사관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및 제4항 중 "유급지원병"을 각각 "임기제부사관"으로 한다.

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7항제3호 중 "유급지원병"을 "임기제부사관"으로 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유급지원병제의 운영)	제20조의2(임기제부사관제의 운
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	<u> 형)</u> ①
장은 우수한 <u>숙련병</u> 을 확보하기	<u>숙련인력</u>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	
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	<u>4</u>
<u>년 6개월</u> 의 범위에서 제18조에	<u>년의</u>
따른 복무기간(제19조에 따라	
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	
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)을 연	
장하여 복무하게 할 <u>사람(이하</u>	사람
"유급지원병"이라 한다)을 선발	
할 수 <u>있다</u> .	있다(이하 선발되어 연장
	복무 중인 사람은 "임기제부사
	<u>관"이라 한다)</u> .
② <u>유급지원병</u> 은 다음 각 호의	② 임기제부사관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	
에서 선발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<u>유급지원병</u> 으	③임기제부사관-
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	
지급한다.	
④ 제2항제1호에 따라 <u>유급지원</u>	④임기제부사
<u>병</u> 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 및	<u> 관</u>

선발 취소에 관하여는 제20조제	
2항을 준용한다.	
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	5
따라 연장복무 중인 <u>유급지원병</u>	임기제부사
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	관
에는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	
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	
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.	
⑥ <u>유급지원병</u> 의 선발 및 복무	⑥ 임기제부사관
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
로 정한다.	<u>.</u>